

건설기술인 행정처분 공고

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등을 위반한 아래 기술인에 대하여 행정 처분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3월 17일
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

1. 대상자

당사자(건설기술자)		처분내용	처분의 원인사실
성명	생년월일		
박정례	57.3.8.	업무정지 3개월 (2022. 4. 4.~2022. 7. 3)	경력 거짓 신고
김영균	71.5.6.	업무정지 3개월 (2022. 4. 4.~2022. 7. 3)	경력 거짓 신고
김학영	78.3.1.	업무정지 3개월 (2022. 4. 4.~2022. 7. 3)	경력 거짓 신고
양성원	57.3.22.	업무정지 3개월 (2022. 4. 4.~2022. 7. 3)	경력 거짓 신고
이성민	57.8.10.	업무정지 3개월 (2022. 4. 4.~2022. 7. 3)	경력 거짓 신고
김동권	59.1.8.	업무정지 4개월 (2022. 4. 4.~2022. 8. 3)	경력 거짓 신고
김육환	64.4.15.	업무정지 3개월 (2022. 4. 4.~2022. 7. 3)	경력 거짓 신고
박정충	64.7.11.	업무정지 3개월 (2022. 4. 4.~2022. 7. 3)	경력 거짓 신고
문병중	59.1.17.	업무정지 4개월 (2022. 4. 4.~2022. 8. 3)	경력 거짓 신고

당사자(건설기술자)		처분내용	처분의 원인사실
성명	생년월일		
박창국	61.2.19.	업무정지 3개월 (2022. 4. 4.~2022. 7. 3)	경력 거짓 신고
하성호	61.10.14.	업무정지 3개월 (2022. 4. 4.~2022. 7. 3)	경력 거짓 신고
유영재	71.6.16.	업무정지 3개월 (2022. 4. 4.~2022. 7. 3)	경력 거짓 신고
정광만	70.6.4.	업무정지 3개월 (2022. 4. 4.~2022. 7. 3)	경력 거짓 신고

2. 법적근거

-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[별표 1]
- 舊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[별표 3]
- 舊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 [별표 2]

3. 유의사항

-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(송달일)부터 90일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4. 기타방법

- 위 공고문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(02-2110-6724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